

기술이전 및 독점영업판매 총판계약에서 Licensee 회사의 일방적 중도해지로 인한 위약  
금 책임 인정 - 라이선시 회사의 특허기술 가치 부정 및 기술불사용 등 항변 불인정: 서  
울중앙지방법원 2018. 5. 4. 선고 2016가합580765 판결



## 계약조항

### 제13조 (특약사항)

본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는 계약금 일십억 원을 지급하고 매월 25일 제품개발 연구비 명목으로 월 오백만 원을 지급한다.

원고는 피고 회사가 위 금액을 지급한 대가로 국내외 제품공급(프랜차이즈) 독점 공급 권한을 부여하고 또한 원고의 발명특허증에 피고 회사가 지정하는(피고 C) 공동발명자와 권리자로 등재를 허락한다.

원고와 피고 회사는 경기도 용인시 I 사업장과 차후 이전 사업장에 50:50%의 지분으로 사업장을 영위하며 원고는 제품개발과 생산을 피고 회사는 전반적인 경영을 책임지고 향후 재산 분할시에도 동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
## 당사자 주장요지 및 계약해지

아. 원고는 2016. 11. 10.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총판계약 제13조가 정하고 있는 계약금 10억 원과 2016. 9.부터의 연구비 월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, 이 사건 D를 무단 반출하는 등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만일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총판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피고 회사가 위 총판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사건 총판계약 제15조 단서에서 정한 위약금을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피고 회사에게 발송하였고, 피고 회사는 2016. 11. 11.자로 이 사건 총판계약을 해지하였다.

## 위약금 약정 - 제15조 "일방적 해지 시 계약금의 50%를 위약금으로 변상한다"

Licensee 피고 주장요지 - 특허기술 효용가치 없음, licensor 원고의 기술이전채무 불이행, 원고의 기망행위 주장

판결요지 - 피고의 기술이전채무 불이행 주장 불인정, 일방적 계약해지 인정 BUT 위약

금 감액 결정

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,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, "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."고 규정하고 있다. 여기서 '부당히 과다한 경우'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, 계약의 목적 및 내용,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,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, 예상손해액의 크기,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.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,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,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4. 12. 10. 선고 2002다73852 판결 등 참조).

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,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6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① 이 사건 총판계약에 따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피고 회사는 수익 원을 지출하였으나 원고가 지출한 비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, ② 주식회사 건농이 원고의 특허 및 이에 따른 제품의 생산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위 총판계약에 따른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었던 점, ③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총판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미 2억 2,000만 원과 6개월간 연구비를 지급한 점, ④ 그럼에도 이 사건 계약이 실패됨으로써 피고에게도 손실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, 위 총판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에 해당되는 위약금 5억 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, 그 금액을 감액하여 그 금액의 60%인 3억 원(= 5억 원 × 0.6)으로 정함이 상당하다.

국제계약, 영문계약, 계약분쟁, 손해배상, 민형사소송, Claim, License, R&D 제휴계약

---

T. 02-591-0657 E. [kkh@kasanlaw.com](mailto:kkh@kasanlaw.com) H. [www.kasanlaw.com](http://www.kasanlaw.com)